

울산지방법원 2020. 5. 28 선고 2019나1323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,항소인 1. A

2. 주식회사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종국

피고,피항소인 D 조합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

변론 종결 2020. 4. 23

판결 선고 2020. 5. 28

주 문

위 당사자사이의 이 법원 2019나 13230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사건에 관하여2020. 5. 28. 한 판결의 주문 제2항 중 "양산시 E 임야 496,306㎡ 중 308,450/504,099지분"을 "양산시 E임야 496, 306㎡중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등 기부갑구 5번의308,450/504,099지분"으로 경정한다.

이 유

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0. 11. 3.

재판장 판 사 신형철판 사 안복열판 사 김현진